

문서번호	BSKS-1-1-06
제정일자	1992.05.01
최종개정일자	2022.07.29.
페이지 수	1/4

1992.05.01.제정

2004.12.01.개정

2012.02.01.개정

2013.09.17.개정

2016.11.01.개정

2017.09.01.개정

2019.02.14.개정

2019.07.16.개정

2020.03.03.개정

2020.09.25.개정

2021.12.22.개정

2022.04.15.개정

2022.07.29.개정

소관부서 : 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 학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개설시기) 계절학기는 하계 및 동계방학 중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규학기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학기로 한다.

- 제3조(수강대상) 계절학기 수강대상자는 직전학기 등록을 완료한 자이며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19.07.16.>
 - 1. 편입학생, 재입학생, 복학생, 전과학생 및 기타 사유로 정규학기에 수강이 불가능한 자 중 60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자격증취득 등을 위해 최소 전공 이수학점을 필요로 하는 자<개정 2012.02.01.,2013.09.17.,2021.12.22.>
 - 2. <삭제 2004.12.01.>
 - 3. 졸업학점이 부족한 자 <개정 2012.02.01.>
 - 4. 현장실습교과목 이수예정자 <개정 2013.09.17.>
 - 5. 재수강신청자 <호 신설 2020.03.03.>
- 제4조(신청학점) ① 계절학기에 수강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현장실습학점을 포함하여 6 학점 이하로 하되, 졸업시까지 최대 12학점 이하로 제한한다. 다만, 재수강과목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. 이 경우 계절학기당 재수강 가능 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로 제한한다.<개정 2013.9.17., 2016.11.01. 2019.02.14.>
 -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 재학생의 경우 계절학기에 수강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졸업시까지 최대 6학점 이하로 제한한다. 다만, 재수강과목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. 이 경우 계절



문서번호	BSKS-1-1-06
제정일자	1992.05.01
최종개정일자	2022.07.29.
페이지 수	2/4

학기당 재수강 가능 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로 제한한다.<항 신설 2022.07.29.>
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수강생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.<항 신설 2017.09.01.><항 변경 2022.07.29.>
- **제5조(수업시수 및 출석)** ①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의 수업시간은 학점당 15시간 이상이 이어야 한다.
 - ② 수업시간의 3/4이상을 출석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

제6조 <삭제 2004.12.01.>

- 제7조(강좌개설 및 폐강) ① 계절학기를 개설할 경우에는 계절학기 개시 전에 각 학과장은 개설과목, 개설 이유 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강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02.01.. 2020.09.25>.
 - ② 졸업학점 미 이수자(교양과목 포함)의 학점취득을 위한 강좌는 해당학과 담당교수의 협조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에서 개설할 수 있다. <개정 2012.02.01.. 2020.09.25>
 - ③ 교과목 수강학생수가 5명 미만일 때에는 강좌개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단,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) <개정 2013.09.17.>
 - ④ 개설교과목은 해당년도 1학기, 2학기에 개설되는 전체 교과목 중 학과선택으로 개설한다. 단,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해 폐강된 과목은 예외로 한다. <신설 2016.11.01.>
- 제8조(수강신청) 계절학기 수강희망자는 수강신청서를 소정의 기간 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9.25.>.
- **제9조(수강료 및 강사료)** 계절학기 수강료 및 강사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3.09.17., 2016.11.01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

문서번호	BSKS-1-1-06
제정일자	1992.05.01
최종개정일자	2022.07.29.
페이지 수	3/4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, 1992학번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2.1)에 의하여 『교무처』를 『교학처』로 『산학처』를 『산학·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며,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06
제정일자	1992.05.01
최종개정일자	2022.07.29.
페이지 수	4/4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2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